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10%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내용으로 개선(안 제7조)

나. 보증금 조항 삭제

-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토록 한 보증금 조항 삭제

다.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해 사용허가 취소 등 발생하는 손해는 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

라. 별표 변경

- 공연 시작 시간의 조정, 전시실 대관 1일 기준시간 신설
-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 등

3. 조 례 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과 합의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술회관”이라 함은”을 ““예술회관”이란”으로, “냉·난방기)등을”을 “냉·난방기)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술회관 사용”이라 함은”을 ““예술회관 사용”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회수는 3회”을 “횟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화:1월”을 “영화: 1개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별표]”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예술회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2. 기타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전시

제7조의 제목 “(사용료의 환부)”를 “(사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료 전액”을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 전액”을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정지,변경,기타”를 “사용정지, 변경, 기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제4호 “사용료 및 보조금을”을 “사용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이 경우”를 “ 이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받은자(이하“사용자”라 한다)”를 “받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람권,입장권(이하“관람권””을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으로, “하며,검인”을 “하며, 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 판매”를 “위탁,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단,”를 “다만,”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관 사용료 기준표

1. 기본시설사용료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대공연장	1 일(09:00~22:00)	350,000	1. 행사용 대관시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오전(09:00~12:00)	100,000	
	오후(13:00~17:00)	130,000	
	야간(18:00~22:00)	160,000	
소공연장	1 일(09:00~22:00)	120,000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오전(09:00~12:00)	40,000	
	오후(13:00~17:00)	50,000	
	야간(18:00~22:00)	60,000	
전 시 실	㎡당 (1일기준)	120	1. 시설별 분할 대관 가능함 2.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함
야외공연장	〃	60	

2. 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대형	1회		30,000	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4. 팔로우핀라이트, 프로젝트는 사용자 운영 5.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소형			20,000	
	외산스타웨인			50,000	
전자오르간		1회		4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시간당		40,000	
	소공연장			20,000	
조명효과장비	팔로우핀라이트	1회		10,000	
	파라이트64	개당		2,000	
	파라이트46	개당		5,000	
	소스포라이트	개당		3,000	
음향시설	음향기본(외부장비등)	1회		50,000	1. 유·무선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2.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무선마이크(10ch)	1회/1ch당		10,000	
	인 터 컴	1회		10,000	
	유선마이크	1회	기 본 3대	15,000	
			추가대당	3,000	
	DAT	1회		20,000	
	CD			10,000	
	MD			20,000	
	전시실 방송장비			50,000	
냉·난방	냉 방	시간당		연료시가의 10%가산	1.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난 방				

시 설 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20,000	1.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2. 덧마루 33㎡이하는 무료 3.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음향반사판		30,000	
	회전무대		20,000	
	고무깔판		50,000	
	덧 마 루	33㎡ 당	20,000	
	승강무대	1회	20,000	
	의자, 보면대	10set당	10,000	
프로젝트	중 앙	1회	100,000	
	좌 우	1회/대당	50,000	
드 라 이 아 이 스 기		1회	10,000	1.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스 모 그 기		1회	10,000	
기 타	비디오촬영(외부기자재)	1회	100,000	
	TV(인터넷)녹화.중계		200,000	
	연습실	1회(4시간)	4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예술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영상기, <u>냉·난방기</u>) 등을 말한다.	1. “예술회관”이란----- ----- ----- ----- ----- -- <u>냉·난방기</u>) 등을 ----- -.
2. “예술회관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2. “예술회관 사용”이란----- ----- ----- ----- ----- -----.
제3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호의 어느 하나</u> ----- ----- -----.
1. ~ 3. (생략) 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되 1일 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과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영화: 1월 이내

2. ~ 8. (생략)

제5조(사용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쏘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하며, 최초사용일 7일 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

-----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어느 하나-----

회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 . <단서 삭제>

1. 영화: 1개월 --

2. ~ 8.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① -----

----- 따라-----

----- 별표-----

-----.

<삭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
험증권 원본을 제출하고 사용종
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료에 미달한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따른다.

③ ~ ⑥ (생 략)

<신 설>

제6조(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또
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전시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관장이 공익을 목적
으로 예술회관을 사용하거나 시
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
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환부) (생 략)

1.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②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⑥ 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행
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
용료를 부과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예술회관 사
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
다.

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
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2. 기타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공연, 전
시

제7조(사용료의 반환) (현행과 같
음)

1. -----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
이 정지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생략)

3.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
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
을 제출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4. (생략)

제8조(보증금) ① 예술회관을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공공기관은
제외)소정 사용료(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규정에 의
한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
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전시
실은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
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을 제10조 제2항 및 제13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
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보증금의 납입기간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사용료 --

2. (현행과 같음)

3. -----

----- 10퍼센트를 공

제하고 사용료 잔액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허가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
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
생한 때
3. (생략)
4. 사용료 및 보증금을 -----
5. ~ 6. (생략)

②제1항 각 호의 경우 사용자에
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 ③
(생략)

④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이 경우 철거한 시설
물을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
의 처분할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사용정지,
변경, 기타 -----
-----.

1. (현행과 같음)
2. ----- 호의 어느 하나

3. (현행과 같음)
4. 사용료를-----
5.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 경우 -----

제11조(관람료) ① 예술회관의 사
용허가를 받은자(이하“사용자”
라 한다)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
를 관람하려는자로부터 관람료
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검
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③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
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과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 이
용에 대해 할인혜택을 줄 수 있
다. 단,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제11조(관람료) ① -----

----- 받은자-----

②----- 관람권, 입장권

(이하“관람권”-----

----- 하

며, 검인-----

③-----

----- 위탁, 판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본다.	----- . <u>다만</u> , ----- -----.
제13조(손해배상) ①·② (생략)	제13조(손해배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 을 면할 수 없다.</u>	<u><삭 제></u>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 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장의 제한) ----- <u>호의 어느 하나</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소과 실 · 과		문화예술회관
입 안 자	과 장	정광배
	담 당	남국진
	담 당 자	장규식 (480-4563)